##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2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 김소희·한지아·우재준

백종헌 · 최은석 · 김종양

최보윤 • 이상휘 • 김용태

김위상 · 김상훈 · 장동혁

인요한 • 권영세 • 강선영

곽규택 • 이종욱 • 김대식

김 건 · 김성원 · 박준태

박정훈 · 신동욱 · 조승환

조지연 • 박수민 • 고동진

유용원 · 김형동 · 최수진

박덕흠 • 김선교 • 이양수

정희용 • 안철수 • 강대식

강명구 · 임이자 · 강민국

이인선 • 조경태 • 안상훈

김상욱 • 조정훈 • 정성국

주진우 • 박성훈 • 서범수

김예지 • 이헌승 • 임종득

이종배 · 서지영 · 강승규

나경원 의원(5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

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 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

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2(기후위기특별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 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
  - 2.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
  - 3.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
  - ②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1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소관 위원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선임한다.

- 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8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기후위기특별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 2.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결산의 예비심사 3.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 ②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의견을 존중하여야하며,해당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후위기특별위 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의장은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소속 의원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선임한다.
- 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 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 다.
- 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 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⑧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